

의안
번호

38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0. 19.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안 향 자 의원 외 16인

나. 의안번호 : 제389호

다. 제출일자 : 2021. 10. 07.

라. 회부일자 : 2021. 10. 08.

2. 제안이유

-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바. 지도·감독(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07. ~ 2021. 10. 13.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등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¹⁾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제2항²⁾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고,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토록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성북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 1)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 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장애인을 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2020년 3월 개소한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붙임1 장애인 및 가족 현황

□ 장애인 현황 : 17,463명 (성북 구민 433,361명의 4%)

[성별 / 장애정도별 현황]

(2021.9월말 기준)

구 분	성별		장애정도	
	남	여	심한	심하지 않은
총 17,463명	9,976명(57%)	7,487명(43%)	6,026명(34.5%)	11,437명(65.5%)

[장애유형별 현황]

(2021.9월말 기준)

계	발달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언어	기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7,463 (4.0%)	1,356 (7.8%)		7,723 (44.2%)	1,783 (10.2%)	1,924 (11.0%)	2,593 (14.9%)	805 (4.6%)	651 (3.7%)	169 (1.0%)	459 (2.6%)
	1,126 (83.0%)	230 (17.0%)								

□ 장애인 가족 현황 : 42,342명(성북 구민 433,361명의 9.7%)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비율	26.4%	33.8%	19.2%	12.1%	8.5%
장애인 수	4,610명	5,902명	3,352명	2,113명	1,484명
가구원 수	4,610명	11,804명	10,056명	8,452명	7,420명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통계연보』 전국장애인가구 규모 통계를 기초로 추계

붙임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내역

☐ 운영개요

○ 설치현황

소재지	성북구 종암로 129, 305호	
규모	· 구조 및 용도 : 철근콘크리트근린생활시설 · 규모 : 115㎡ · 실내 규모 : 사무실 1, 상담실 1, 강의실 1, 휴게실 1	
임차현황	금15,000천원 / 월세 1,210천원 · 계약기간 : 2020.2.19.~2022.2.19.(2년)	

- 운영방식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법인) 선정
 ※운영법인 : (사)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대표: 신강섭]
- 운영인력 : 4인(무급센터장1, 직원3), 센터장(권혜원)
- 사업대상 : 관내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이용자 수: 120명)
- 주요사업

사업명	내용
상담·사례관리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가족 역량 강화	부모·비장애 형제자매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긴급 돌봄	가족구성원의 긴급 발생상황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제공	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발굴
중증장애인 동행진료사업	혼자서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

☐ 위탁기간: 2020. 3.16. ~ 2023. 3.15.

☐ 총사업비 : 268,960천원(시 112,916천원, 구 156,004천원)

○ 위탁운영비 : 199,582천원(시비50%, 구비50%)

- 인건비, 공과금, 프로그램운영비 등

○ 장애인동행진료사업 : 44,858천원(구비10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 : 14,520천원(구비10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산취득비 : 10,000천원(구비100%)